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영상매체의 발전과 실감콘텐츠 활성화에 따른 영업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의 예외단서 신설(시행규칙 별표2)

- 1) 시청거리 확보, 영사막 설치 등 현행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은 머리 착용형 영상 표시기기(HMD)에 기반한 가상현실(VR) 영상 제공 시에는 과도하여, 시설기준의 예외단서 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청실 기준 (2)에서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을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 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세부시설 기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사막의 기능을 하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사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1. 비디오물감상실업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 설 기 준	구분	시 설 기 준
시 청 실	(1) (생략)	시 청 실	(1) (현행과 같음)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 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구분	시 설 기 준	구분	시 설 기 준
세 부 시 설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세 부 시 설	(1)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사막의 기능을 하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사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